

2026년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

I 원예산업 육성지원사업

공 통 사 항

I. 사업목적

- 채소, 특작농가 기반시설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및 농가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
-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·고효율 생산체계 구축

II. 추진방향

- 우리군 전략품목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
-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, 기계·장비·농자재 지원

III. 근거법령

-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

IV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
2. 사 업 비

- 지원범위 : 농가당 총사업비 4억원 이내(보조금 50% 자부담 50%)

3. 사업대상자 :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·특작 재배하는 원예 농가

4. 지원제외 대상자

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
-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
- 허위서류,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

5. 지원제외 사업(개별사업에따라 기준이 다름)

- 단순 일회성(토양개량제, 비료, 농약 등), 소모성 농자재(일반 하우스 비닐, 비닐형 부직포) 및 종자 구입
- 경상경비(ex. 인건비) 관련 비용
- 관정 및 지하수 개발
- 농산물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·기계·장비 구입

※ 개별사업에따라 기준이 다름

6. 지원단가(지원한도액)

구 분	지원대상	단위	단가(천원)	비 고
비가림하우스	〃	동	3,000 이하	
노후파이프 교체	〃	개	16 이하	
자동개폐기	〃	동	800 이하	
내부공기순환팬(컨트롤박스미포함)	〃	대	140 이하	컨트롤박스 별도지원
무인방제기	〃	대	4,000 이하	
관수시설	〃	m ²	1 이하	
이동식 저온저장고	〃	m ²	600 이하	
장기성 PO필름	〃	m ²	5이하	
스프링클러	〃	m ²	1 이하	
제조용 매트	〃	m ²	1 이하	
생분해성 필름	〃	m ²	0.12 이하	
딸기고설재배	〃	m ²	30 이하	

V. 사업추진요령

1. 사업추진절차

군	: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(단,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) :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: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, 정산보고 ↑ ↓ 사업계획시달, 자금교부
읍면	: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, 수요조사 결과 제출 :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: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: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↑ ↓ 사업확정, 사업비 집행
농업인	: 사업신청, 사업추진, 정산서 제출

2. 사업 추진단계

-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,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
 - 시설·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·설치 지도
-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·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
 -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
 -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

(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)

※ 1사업 1통장 원칙

※ 계좌 거래 원칙(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), 현금 및 대
체 거래 불가

-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,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
『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』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
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
-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
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,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
 - 단,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
쓸 경우 가능
- 비가림 하우스 및 노후파이프 지원 사업
 - 자재는 SPVHS, SPVHS-AZ 인증 제품만 사용
 -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,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
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
- 이동식 저온저장고
 -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『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』에 기재된 물품으로 사업
추진해야 하며 냉동고 설치 및 기준면적(3평) 이상 설치 금지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공인,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, 한국농기계공업협동
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,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
품 사용
 -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는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
시험성적서 제출
 -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
 -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
계산서 제출,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

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

-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

3. 사후관리단계

- 읍·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·기자재 등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」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(생산자 단체)별 관리대장을 비치·활용하고, 완료된 시설·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, 임의처분,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-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	
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	시설설치 완료시	10년간	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)
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	장비구입시	5년간	

-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 『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』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, 행정벌 부과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

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

-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(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)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
I. 사업대상자

-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,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에 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
II. 지원대상사업

- 원예특작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(장기성PO필름, 내부공기 순환팬, 점적관수, 스프링클러 등) 지원

지원 제외

일회성 농자재(토양개량제, 비료, 농약), 관리기·지게차·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
중소형농기계 구입 제외

III. 지원비율

- 보조 50%, 자부담 50%

IV. 재 원

- 원예산업육성 지원([관수시설](#), [저온저장고](#), [장기성PO필름 등](#))(군비)

V. 지원단가(지원한도액)

-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

2

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

I. 사업대상자

-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,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시설원에 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
II. 지원대상사업

- 시설원에 일반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기존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

III. 지원비율

- 보조 50%, 자부담 50%

IV. 재 원

-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(군비)

V. 지원단가(지원한도액)

- 비가림하우스 기준단가 : 3,000천원/동/330㎡(인건비 제외, 장기성 PO필름 포함)
- 노후하우스 기자재 기준단가 : 16천원/개(최소 9m 파이프)

VI. 참고사항

- 자재는 SPVHS, SPVHS-AZ 인증 제품만 사용
 -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,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.

일 반 사 업

1.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
2. 지원비율 : 도비 15%, 군비 35%, 자부담 50%

3. 사업대상자

- 채소·특용작물 등 주요농산물 재배 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
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,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(농지)을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(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)

4. 지원대상사업

가. 시설하우스 현대화

- 단동하우스 중심으로 지원 -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
- 고설재배시설, 양액재배(재활용)시설, 양액재배용 농업용 정수기, 양액 조성비, 동력 배토기
- 자동개폐기, 자동보온덮개, 다겹보온커튼, 무인방제기, PO장기성필름, 제습기, 저온수송차량(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한함, 1톤), 내부 공기 순환팬, 관수·관비시설,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(전기승압 포함) 등
- * 신규 시설·장비 설치(증설) 없이, 단순 전기인입·승압은 지원에서 제외
- 절전형 탄소·고주파·원적외선용 온풍·난방기(성능시험분석자료 필), 전자식 활성수기, 농가보급형 LED 광원, 탄산가스 발생기, 지중 냉·온풍시스템 등

나. 밭작물(노지채소) 경쟁력 강화

-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: 비닐 피복기, 파종기, 정식기, 이식기, 세척기, 수확기, 결속기, 건조기, 마늘줄기절단기, 마늘쪽분리기, 마늘·양파박피기, 양파생산기계화 일관시스템(파종기·정식기·수확기 등 일체), 보행형제초기, 농업용동력운반차(승용4륜, 0.5톤 이상, 경운기 제외), 보행전동운반차, 자동농약호스릴 등

* 양파 일관시스템은 재배면적 100ha 이상(2020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) 시·군에 한하며,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.5ha 이상 재배 농가 지원 가능

< 지원 제외 >

- 관리기, 지게차, SS분무기, SS기형퇴비살포기, 비료살포기, 주행형방제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·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

- 다목적 스프링클러(노지용), 마늘건가·건조시설, 반영구 터널·덕시설(호박 등), 제초용 매트(차광·그늘막 제외), 생분해성필름(광분해성필름 제외), 농업용수처리기 등
- 농업용트랙터: 밭작물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

*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

다. 생력화 기계·장비

- 이동식저온저장고(10m²) 설치

* 지원대상 : 고추, 마늘, 양파, 파, 생강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지원

- 지원조건: 재배면적 100ha 이상(2022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) 시·군에 한하며,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.5ha 이상 재배 농가, 법인(3.0ha 이상)

* 부설시공방지,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(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).

III. 사업추진요령

1. 사업시행주체: 시장·군수

○ 사업추진절차

도	사업계획 수립, 사업비 교부, 사업추진 지도·점검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대상자 선정보고, 정산보고 ↑ ↓ 사업계획 시달, 자금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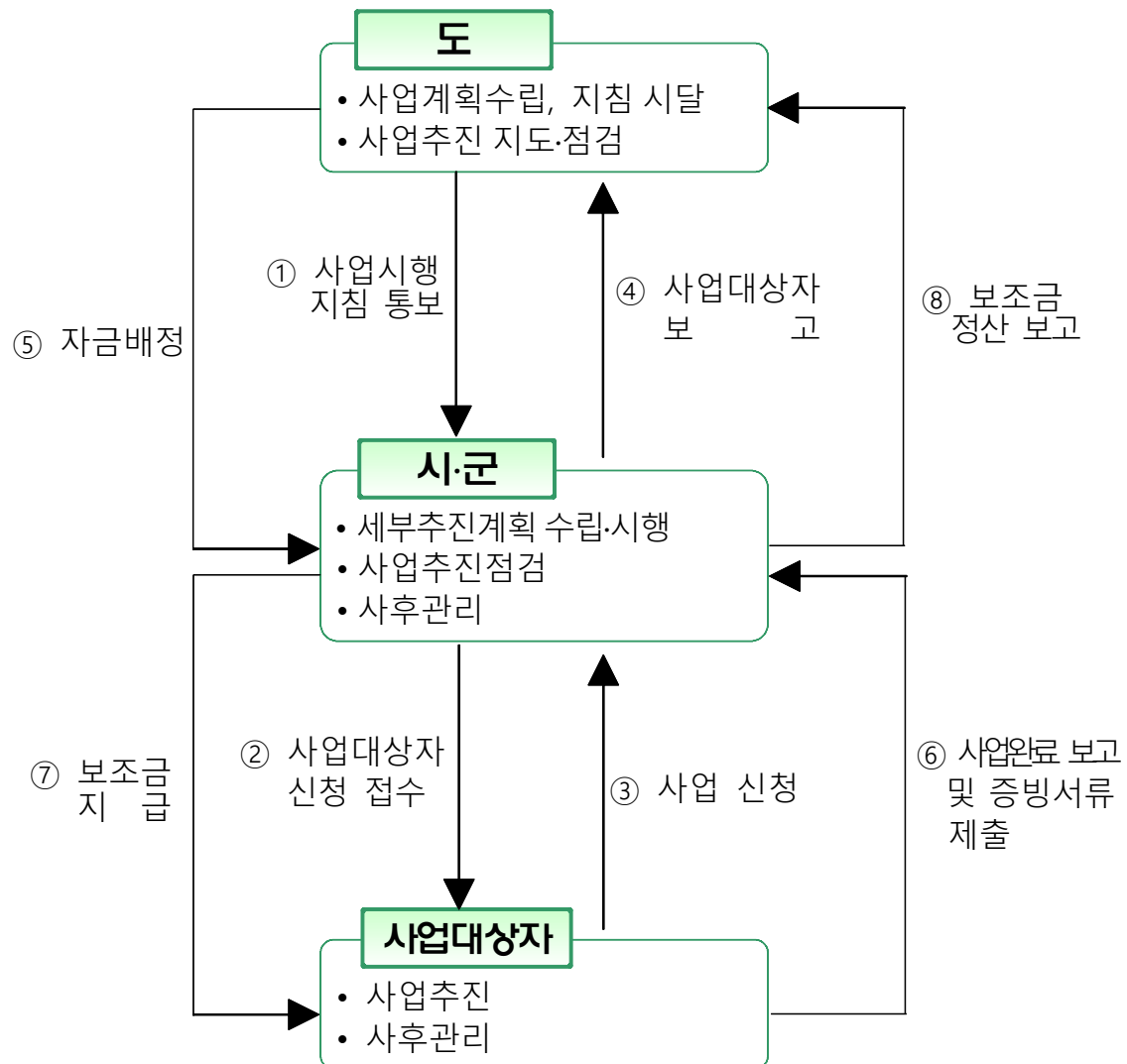
시·군	세부추진계획 수립·시행, 대상자 선정, 자금지원, 사업추진점검, 사업정산, 사후관리
-----	--

사업신청 ↑ ↓ 사업확정, 사업비 집행

사업자	사업신청, 사업추진, 정산서 제출
-----	--------------------

○ 세부추진일정

단계별	분기별 추진 내용	비 고
1/4분기	○ 지침 시달 ○ 사업대상 선정 결과 보고(시·군 → 도) -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·검토 ○ 보조 내시 및 교부결정·교부	
2/4분기	○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○ 사업추진 부진 시군 독려 ○ 사업추진 문제점 파악	
3/4분기	○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○ 사업추진 문제점 보완 ○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도·점검	
4/4분기	○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○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○ 사업 마무리 지도·점검	



2. 사업신청단계

-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(서식1, 서식1-1, 서식1-2)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(매년 7월 중)
- 시·군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보고(매년 7월 말까지)

3.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

- 시·군은 도에서确定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(서식2)를 도에 보고('24. 2월 말까지)
 -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지 및 신청 농가의 재배규모, 영농여건, 사업추진능력, 부지확보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
 -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

- 시설·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·허가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(관련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)
- 사업부지 미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
 -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가계약 체결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
 -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,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확약서(서식5) 제출
 - 단,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능(임대차 또는 사용 기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이어야 함)
- 시·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

4. 사업추진단계

- 시장·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※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 등록업체
 -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**내재해형 시설규격**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-104호) 준수 지도 ※ 농업기술포털 농사로(nongsaro.go.kr, 농업자재-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) 게재
 -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되었거나,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
 - 시설·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·설치 지도
-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(저수지, 양수장, 보, 관정 등)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, 관수(지하수)는 농업인이 자체 해결
- 사업 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, 반드시 변경 사항을 도에 통보

- 단, 세부사업계획 30%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하여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
- 사업대상자는 시장·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는 사업 적합 및 자부담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
- 시장·군수는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~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·도비 사업 지원 제한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
-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,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(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)
-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있는 경우,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을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함.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
- 매 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, 점검결과는 도 제출(서식 3)
- 예산 이월·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

5. 사후관리단계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·기자재 등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
- 지원대상자(생산자단체)별 관리대장을 비치·활용하고, 완료된 시설·장비 등

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
-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, 임의처분, 담보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·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구 분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시작시점	끝시점	
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	시설 설치 완료 시	10년간	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)
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	장비 구입 시	5년간	단,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